

#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94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2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예술과장 최다원)

#### 가. 개정이유

- 법제처 권고에 따라,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개선하고, 위탁운영 관련 적용 조례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위탁운영에 관한 적용 조례를 명확히 규정(안 제7조)
-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삭제 및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 규정(안 제10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##### 1) 관계법령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117조

나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

#####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##### 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7961(2026. 2. 19.)호]

##### 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466호

- 예고기간: 2026. 3. 3.~2026. 3. 23.(20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# 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7조제4항)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,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적정함.
- (안 제10조)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의 주체를 수탁자에서 군수로 일원화하여,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타당함.

#### 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### 5. 토 론: 없음

### 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